

## 특집 08

# UCC와 저작권

### 목 차

1. 서 론
2. UCC와 저작권
3. 결 론

### 이 대 의

(성균관대학교)

## 1. 서 론

손수제작물이나 이용자제작콘텐츠로 불리는 UCC(user-created content)는 1999년 경부터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데,<sup>1)</sup> UCC는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로서,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과 달리 이용자들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로 정의된다.<sup>2)</sup> 전통적으로 콘텐츠는 방송, 영화, 신문 등 전문가에 의하여 생산되어 왔고 일반인들은 이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렀으나, UCC에 의하여 이용자들은 자신이 스타, 감독, 작가, 아나운서가 되어 자신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전세계를 향하여 직접 선보일 수 있다. 어느 평범한(연주 실력으로는 비범한) 대학생이 캐논 변주곡을 기타로 연주한 UCC가 1,000만 이상의 조회에 의하여 시청된 것이 좋은 예이다.<sup>3)</sup> 실제로 지금은 UCC라는 것이 인터넷과 방송을 풍미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UCC는 저작권, 프라이버시, 표현

의 자유, 초상권, 페블리시티권, 음란콘텐츠 등 여러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특히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Web 2.0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UCC는 그 유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P2P 파일교환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소리바다에 관한 P2P 파일교환의 경우 2002년 7월 경에 가처분결정이 나온 이후 2007년 1월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려 4년 반이 소요되었다. 이 와중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와 같은 권리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의 주체가 모두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

1) UCC라는 용어는 1999년 포털인 다음의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 1999-2002’에서 ‘Daum 영화 섹션에는 Daum 영화 평론가라는 고급 UCC가 있습니다’를 사용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알려지고 있다. 민 윤정, Web 2.0 기반에서의 UCC 서비스 트렌드, 계간저작권 제77호 봄호 41(2007). UCC는 영어권에서는 오히려 UGC(user-generated content)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User-Generated\\_Content](http://en.wikipedia.org/wiki/User-Generated_Content)

3) 올해 최고의 동영상 UCC는? 아테일러, 2006.12.5.

된다. 이 글은 UCC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UCC와 저작권

### 2.1 UCC의 주체와 저작권

UCC의 제작 및 유통에서는 UCC 제작자, 서비스제공자(제작자들이 자신들의 UCC를 탑재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자), 저작권자, UCC 이용자 등의 주체들이 존재한다. UCC와 관련되는 권리주체는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이다.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저 §§ 16-22)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저 §§ 11-13)이 인정된다.

UCC 저작권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UCC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작적인 표현이 직접 표현되는 UCC로서, 실로 Web 2.0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UCC라 할 수 있다. 이같은 UCC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UCC에 있어서도 UCC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음악저작물이라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나 실연자의 실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두 번째의 저작권 문제가 UCC 저작권 문제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서 소위 UCC라고 제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UCC는 Web 2.0을 대변하는 UCC가 될 수 없으며 UCC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 태양에 불과할 뿐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유는 사실상 대부분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 UCC 제작자들이 방송 등과 같은 전문적인 콘

텐츠 제작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2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UCC는 제작된 이후 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탑재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가진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이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 전체나 일부를 자신의 UCC에 포함시키는 경우, 복제권이 침해될 수 있다. UCC를 제작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주로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버에 타인의 저작물을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복제의 정의, 저 §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제권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복제의 예외(저 §30)가 허용되므로,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복제가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제작자가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사적복제에 해당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비영리성)과 객관적 요건(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 충족되므로 사적복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UCC라는 것은 제작된 후 제작자 자신만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많은 이용자들에 의하여 이용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제작된 UCC를 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적복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리마다에 대한 판결에서도 MP3 파일을 많은 사람들

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적복제를 부인하였다.<sup>4)</sup>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에 탑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UCC에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이용하여 UCC로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는 이러한 일부 내지 부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느냐 여부에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유사한 부분이 양적인 상당성을 충족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sup>5)</sup>

둘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창작성을 일부 가미하여 새로운 저작물인 UCC로 만드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 §5).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원저작물인 소설에 대하여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다.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UCC라 할 수 없음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은 Web 2.0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UC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인 UCC의 제작도 장려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다. UCC 활성화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UCC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하여 개변(改變)을 가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되는데(저 §§11-13), UCC와 주로 관계하여 침해될 수 있는 권리는 동

일성 유지권이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 변경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기 위하여서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호에 개변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원래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하여져야 하며, 저작물에 대한 개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변전후의 저작물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곧 타인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 변경하여 사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수정함으로써 작성되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이 가하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수반하게 된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표현을 대폭적으로 변경하게 되어 원저작물에 표현된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게 된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동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외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독립하여 보호하는 2원론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된 경우 이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 2003노4296 판결 저작권법위반(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가치분이의; 서울고법 2003나80798 손해배상(기).

5)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472-73, 260 (2005).

별도의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부인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sup>6)</sup> 따라서 UCC 제작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인 UCC를 제작하면서 저작물의 내용 등을 변경시킨 경우, UCC 제작자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뿐만 아니라 동일성 유지권까지 침해하게 된다.

## 2.3 OSP와 저작권

### 2.3.1 저작권의 소재

개별적인 제작된 UCC는 UCC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포털 등의 서버에 탑재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서버의 운영자는 UCC라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sup>7)</sup>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OSP의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UCC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므로, UCC를 제작한 자가 그 UCC에 대한 저작권자가 된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UCC를 탑재하는 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고 있는 약관에 동의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약관에는 제작자가 탑재한 UCC에 대한 저작권의 소재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약관이 UCC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저작권이 OSP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OSP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2.3.2 OSP의 책임

개별적인 UCC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들이 침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작권자가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들을 상대로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거

나 가능하더라도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가입자(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OSP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상이 UC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UCC 서비스 제공자도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OSP가 가입자(UCC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저 §§ 102-103). 우선 OSP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저 §102).

또한 OSP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권리주장자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6) Id. at 260.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저 §2.

OSP는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OSP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OSP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어 복제·전송의 재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저작권 침해로 판명된 경우)와 복제·전송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하여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저 §103).

OSP로 하여금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규정은 OSP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곧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OSP가 자신의 서버에 올라와 있는 침해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기계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입자(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OSP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몇몇 판결이 이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인터넷 등 온라인의 속성상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한 침해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그 침해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는 순식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는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장소나 시설의 제공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들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 또는 권리자의 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한 경우 또는 이들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당해 사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조나 형태, 범위, 침해 행위의 정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sup>8)</sup> OSP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OSP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이후의 판결<sup>9)</sup>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저 §104),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DRM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탑재된 UCC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다면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 2.3.3 OSP의 권리

OSP로서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UCC에 대한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그 UCC를 제작한 자이지만, 서비스제공자도 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곧 개별적인 제

8)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8가합 111554 판결.

9)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항소 【손해배상(기)】.

작자들이 탑재한 UCC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개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이다(저 §2).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개별적인 UCC’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UCC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 §93 I), 다른 서비스제공자가 UCC로 구성되어 있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한 경우, 그 다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3. 결 론

현재 UCC와 관련된 저작권 인식은 초기의 P2P 파일교환에서와 같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저작물을 베껴서 제작된 UCC는 진정한 UCC가 아니라 UCC에 편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UCC는 창의적으로 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작권을 존중하고 UCC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의 발생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UCC가 패러디물인데, 패러디는 타인의 생각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사회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패러디에 관한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UCC 저작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곧 개별적인 UCC 제작자들을 대신하여 서비스제공업자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MP3나 P2P 파일교환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패배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작권자들이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에 응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UCC는 다양한 정보제공, 새로운 가치창출, 표현의 자유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UCC에 의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제작자, 저작권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도록 이해관계자, 특히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저자약력



이 대 익

-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198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1992년 Univ. of Wisconsin Madison Master in Arts/Legal Institutions(M.L.I.)
- 1993년 Univ. of Wisconsin Madison Master of Laws (LL.M.)
- 1995년 Univ. of Wisconsin Madison Doctor of Juridical Science(S.J.D.)
- 2002년 3월~2006년 8월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부교수 지적재산권 담당
- 2006년 9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지적재산권 담당
- 2005년 5월 현재 Creative Commons Korea 사무총장
- 2002년 5월 현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인
- 2004년 1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2006년 4월 현재 문화관광부 한-미 FTA 저작권 Task Force 관심분야 : 지적재산권법
- 이 메일 : [ipprof@skku.edu](mailto:ipprof@skku.edu)